

정정신고(보고)

2023년 4월 3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투자설명서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년 5월 4일

3. 정정사유

-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(기타비용, 증권거래비용 등 업데이트 포함)
-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 변경 반영
- 시행령,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(2022.8.30 시행)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-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(2022.4.1 시행)

4. 정정사항

항 목	정정요구· 명령관련 여부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2부. 5. 운용전문인 력	아니오	정기갱신	-	작성기준일 기준 작성
제 2 부. 8. 나. 투자제한	아니오	시행령, 금융투자 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2.8.30 시행)	----- 초과일부 터 3개월까지(부도 등 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 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 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 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 다.	----- 초과일부 터 3개월까지(부도 등 으로 처분이 불가능하 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 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 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제2부. 10. 가. 특수위험	아니오	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2.4.1 시행)	(신설)	<u>안정적 자산 30%이하 시 시가평가 전환에 따 른 위험 :</u> 이 투자신탁의 안정적 자산이 자산총액의 30%이하인 경우 기준 가격 계산시 시가평가

				로 전환됩니다. 안정적 자산이란 금융투자업규정 제7-36조 분류기준에 의거한 현금, 국채, 지방채, 특수채, 통안채, 기타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,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말합니다.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 등에 불리한 영향을 받아 안정적 자산이 30%이하가 되는 경우 시가 계산에 의한 기준가격을 반영 시킴에 따라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.
제2부. 10. 라. 이 집합투자 자기구에 적합 한 투자자 유형	아니오	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 변동성(연 환산) 변경 반영	- 이 투자신탁은 <u>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 간 주간수익률 변동성 (연환산)이 0.06%이므 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매우 낮은 6등급으로 분류됩니다.</u>	- 이 투자신탁은 <u>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 간 주간수익률 변동성 (연환산)이 0.11%이므 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매우 낮은 6등급으로 분류됩니다.</u>
제2부. 12. 나. 1) 집합투자재 산의 평가원칙	아니오	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2.4.1 시행)	(붙임1) 참조	(붙임2) 참조
제2부. 13. 나. 집합투자기 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※ 1,000만원 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 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 별 예시	아니오	정기갱신	-	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
제3부.	아니오	정기갱신	-	최근 결산기 기준, 작

<p>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</p>				<p>성기준일 기준 작성</p>
<p>제4부. 1.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</p>	<p>아니오</p>	<p>정기갱신</p>	<p>-</p>	<p>작성기준일 기준 작성</p>
<p>제 5 부. 2. (2) 임의해지</p>	<p>아니오</p>	<p>시행령,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2.8.30 시행)</p>	<p>-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1. ~ 2. (생략) 3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</p>	<p>-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년(법시행령 제 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법시행령 제</p>

			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	<u>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
제 5 부. 3. 가. (2) 자산운용보고서	아니오	시행령,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2.8.30 시행)	<p>- 다만,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</u>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(법 제 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)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</u></p> <p>4. (생략)</p>	<p>- 다만,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</u>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(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)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제 5 부. 3. 나. (2) 수시공시	아니오	시행령,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2.8.30 시행)	<p>-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<u>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</u></p>	<p>-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</u></p>

			<p>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9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(이하 생략)</p>	<p>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년(<u>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9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(<u>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(이하 현행과 같음)</p>
제5부. 4. 가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나. 집합투자기간 거래에 관한 사항	아니오	정기갱신	-	작성기준일 기준 작성

(붙임1)

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

1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

구 분	평가원칙
-----	------

<p>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경우</p>	<p>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, 그 차이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(1,000분의 5)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</p>
--	---

(붙임2)

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

1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

구 분	평가원칙
<p>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경우</p>	<p>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, 그 차이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(1,000분의 5)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</p> <p>-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(이하 “안정적 자산 비중”이라 한다)이 30%를 초과하여야 함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현금 2.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, 통화안정증권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3. 양도성 예금증서 4.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다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예의 예치 5.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단기사채 또는 어음(기업어음증권을 포함한다) 6. 금융투자업규정 제7-19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기대출 또는 환매조건부 매수. 다만, 환매조건부 매수의 대상증권이 국채증권,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이며 최소증거금률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-19조 제3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7.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,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어음 또는 단기사채 <p>- 집합투자업자는 안정적 자산 비중이 30%이하인 경우 상기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함. 다만, 안정적 자산 비중이 3영업일 연속 30%이하가 된 경우는 제외함</p> <p>- 이 투자신탁은 금융투자업규정 제7-36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장부가격으로 평가함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합투자업자가 위기상황에서의 장부가격 평가 중단을 포함하여 선환매유인 관리 조치를 적절히 취하는 경우

	2. 직전 10영업일 이내에 일시적·일회성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이 발생한 경우
--	---